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
	배포일시	2018. 7. 12.(목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 과장 박건수, 사무관 이형주 ☎ (044) 201-4600, 4603
보 도 일 시	2018년 7월 1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12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고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억 원 부과 6월 2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열려...계약자 관리·감독 필요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안산선 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,
 - 한국철도공사가 「철도안전법」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1억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.
 - 이 사고는 2017년 9월 10일 안산선 한대앞역에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(주)푸른환경코리아 소속 청소작업자가 승강장을 이동하다가 당고개행 열차와 접촉하여 사망한 사고로,
 - 사업주인 (주)푸른환경코리아가 청소작업자에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였다.
 - *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(주)푸른환경코리아와 그 현장소장에게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의 근로자의 유해·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각각 벌금500만원을 선고(2018.2.8.)
- 「철도안전법」의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운영자 등이 소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위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관리체계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.

○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(주)푸른환경코리아의 안전관리 위반행위로
청소작업자 사망하였는데,

- (주)푸른환경코리아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라는 위법한 행위가
있었고, 업무를 (주)푸른환경코리아에 위탁한 한국철도공사가 이
러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 관리,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
있다는 것이다.

- 즉, 「철도안전법」상의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(주)
푸른환경코리아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
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결정 취지이다.

□ 국토교통부 박건수 철도안전정책과장은 “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
결정은 철도운영자가 소관업무를 위탁했다고 해서 철도안전에
관한 책임을 모두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,

- 철도운영자가 위탁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철도
안전 감독을 강화하여 철도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”이
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
안전정책과 이형주 사무관(☎ 044-201-460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